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3 | 2026.10.12. (2026.10.6. ~ 2026.10.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이하 ‘K-GX*’)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정부 투자 1,000조원, 민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한 10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사업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 등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전자적 방식의 국경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의 등록 체계 정비 및 관세청의 외환 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공동의결권 행사는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공동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내국 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 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육성하며, 연구개발·실증·투자·조달·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능형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판매 중지 등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대리하도록 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2026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12. 12개 위원회, 10.13. 12개 위원회, 10.14. 5개 위원회, 10.15. 11개 위원회, 10.16. 11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한국형 녹색대 전환(K-GX) 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14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3인)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18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1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20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2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2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7인) .. 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23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2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25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환경] 2026년 9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임직원 해고 시 유의 사항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 10년간 정부 투자 1000조원, 민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원 투자 -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한 10년 계획 발표	2026-10-07
---------	---	------------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이하 ‘K-GX*’) 전략」을 발표했음

* Korea-Green Transformation(K-GX), 한국형 녹색대전환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다고 밝힘

* 재경부, 기후부,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노동부, 중기부, 기획처, 국조실, 금융위, 산림청

① 신성장 동력 K-GX

<조선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 및 소비를 확대.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녹색 전환을 가속할 계획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

<모든 수송 수단의 전동화>

수송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을 촉진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육성>

녹색 전환의 달성을 위한 핵심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녹색제조 강국으로 한단계 도약. 각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기술개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

<기후테크 혁신기업 성장 촉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지원. 창업 초기-성장기-확대기 등성장 단계별로 혁신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층 지원,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② 모두의 K-GX

<지역과 국민 모두가 누리는 GX>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 대표적으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투자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

<국토 전반의 녹색 전환>

국토 개발 과정과 생활공간에서 화석연료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를 탈피. 도심형 태양광,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및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

<선제적인 기후리스크 대응>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기후의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 및 조선업·물류업 등 업종 대상으로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 시 금융·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후 적응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생과 포용의 GX>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 특구 지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대상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

③ 지속가능한 K-GX

<10년간 재정·기후금융 1,000조 원 지원>

정부는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년간('26~'35)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 혁신 환경 조성>

녹색 전환의 초기 단계에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병행.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

④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K-GX 전략에 이어,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기 위한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❶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❷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❸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❹국민 주거공간의 GX 4대 분야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

2026-10-06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사업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 등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음

*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하여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됨(법 제21조의2 제1항). 또한,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법 제13조 제6항)

* ①순차공개 가격책정, ②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③잘못된 계층구조, ④취소·탈퇴 등의 방해, ⑤반복간섭

공정위는 그간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3.7월)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5.2월) 등을 배포한 바 있음. 또한,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의 시행 이후, ’25.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관련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이 반영되는 등 제도적 여건도 변화하였음

이에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현행화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를 보완하였다고 밝힘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개념 및 소비자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주요 질의사항이나 법 적용상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안내하였음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가입취소 또는 회원탈퇴(이하 ‘취소·탈퇴’)를 위한 버튼을 소비자가 해당 버튼이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 등의 위치에 배치하는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는 것을 권고하였음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8.24.~9.3.)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자 간담회(9.7.)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밝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여러 자료에 분산되어 있던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과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2026-10-06 시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검토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며,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08 시행
----------	-------------------	---------------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광고한 자에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06 시행
-------	---------------	---------------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0-06 시행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은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07. ~2026.10.26.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전자적 방식의 국경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의 등록 체계 정비 및 관세청의 외환 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6\)](tel:044-215-47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08. ~2026.11.17.
-----------	----------------	-----------------------------

알뜰폰의 요금 인하 여력을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044-202-4923, 팩스: 044-202-6043\)](tel:044-202-4923)

산업통상부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06. ~2026.11.16.
-------	------------------	-----------------------------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전화: 044-203-4040, 팩스: 044-203-4708\)](tel:044-203-404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2026-10-06 발의
-------	---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대금 회수 지연은 재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 및 제조 착수를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사업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유휴 자금화할 여지를 주어 수급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2026-10-06 발의
-------	---	---------------

통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고 주식가치 내지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개별적으로는 5%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 투자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주식가치(기업가치) 제고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렇다 보니, 60%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 PBR이 1 미만일 정도로 우리 상장기업의 대다수에서 주가누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의하면 5% 이상의 공동보유자가 임원의 선임·해임 등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결권 행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동의결권 행사를 주식을 공동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해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더 나아가, 투자대상

기업들이 주주총회 대응을 협의하는 행위도 공동의결권 행사로 확대해석하여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음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의 개념이 포섭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의제하는 것은 개념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아 **공동의결권 행사는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공동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안 제133조의2 신설)**

법 제147조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광범위한 확대해석으로 의결권의 공동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안 제147조의2 신설),**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와 법 제152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133조의2제3항 단서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6-10-06 발의

현행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 금융비용 및 미수금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조의2, 제9조의2 및 제18조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2026-10-06 발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대형 풍력발전 기자재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설치하는 전용 선박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풍력터빈설치선(WTIV)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핵심이 되는 필수 설비로 볼 수 있음. 관련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세제상의 지원을 포함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풍력터빈설치선(WTIV)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블레이드 등 풍력에너지 생산용 핵심 기자재는 관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과 견주어 볼 때 이를 설치하는 풍력터빈설치선(WTIV)에 대한 관세 지원 필요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8조의3)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10-07 발의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3인)

2026-10-07 발의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화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영상콘텐츠와 달리, 공연콘텐츠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동일한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고 실시간으로 호흡·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독보적인 현장성과 즉흥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대면 소통의 특수성은 영상콘텐츠를 통해 확보된 글로벌 팬덤이 공연 현장으로 유입되고 다시 현장의 경험이 영상 및 음원 소비로 확장되는 등 K-콘텐츠 산업 전체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임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과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안 제25조의 9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
인)

2026-10-07 발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의 수나 상속재산의 분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등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반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인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에 정확히 대응하여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분할을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인별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어 사회정책적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체계와 정합성을 갖추어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이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납부의 무·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2026-10-08 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중견 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업의 양산설비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 생산일정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큼

이에 정부는 반도체·첨단소재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 베드인 트리니티랩을 구축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2025년 10월 재단법인 트리니티랩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그 설립목적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양산테스트 지원 및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함

이러한 양산실증시설을 원활하게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기업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특히 민간기업은 금전이나 장비의 출연 외에도 양산공정시설의 공간, 생산·계측 장비의 사용, 공정기술,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지원기관이 양산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산실증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7 및 제106조의12)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2026-10-08 발의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될 필요가 있으나, 민간자본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정책펀드는 투자금 회수시점이 정해져 있어 장기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

과 투자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사에 **기존 위탁계정과 구분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전략투자계정 전담인력 확충, 정부의 현금·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 계정 간 구분회계 및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를 기존 위탁자산 운용과 전략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2026-10-08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2026-10-08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0인)

2026-10-06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2조 및 제2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6-10-06 발의

최근 인공지능·자율무인체계·사이버·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에서 실증·조달·수출에 이르는 전(全)주기에서 제도적 공백과 진입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육성하며, 연구개발·실증·투자·조달·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안보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 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출연·출자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조화되도록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및 회수금 재투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전략적 투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10-07 발의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부품·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025년)’을 보면, 제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의 제한으로 재해사망 등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려움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산업발전을 위한 공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안 제41조제3호)

또한 자본재산업은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부터 기계장비, 부품, 소재, 장비산업까지 전·후방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됨. 중소기업부의 중소 제조업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 생산액의 32.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제한되고, 보험료 지출부담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아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41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10-08 발의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재난안전 등 사회 전반 영역으로 로봇의 도입 및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로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 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10-08 발의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블로그·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이에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판매 중지 등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정한 상표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상표권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7인)**

2026-10-08 발의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2026-10-07 발의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유통 없이 제조·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유통 목적의 제조·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인 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승인심사·조사·검사 등 정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기업의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조사·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제27조, 제36조, 제36조의3 및 제37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6-10-07 발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2026-10-08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6-10-06 발의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0인)

2026-10-06 발의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은 발주자가 하도급 공종(工種)의 완성도나 원활한 공사 착수를 평가하여 실비 지급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수급인이 자금을 단기 유용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여지로 활용되어 왔음. 이는 하도급 현장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2·3차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자재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됨

따라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6-10-06 발의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의 공급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활용이 더욱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우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2026-10-06 발의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 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 (안 제29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 시간
10. 12.(월) 12개 위원회	법사위	감사원	감사원 10:00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재경위	한국은행	한국은행본점 10:00
	교육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14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회	국회 10:00
	외통위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애틀란타총영사관 등 4개 기관	주미국대사관 10:00
		<구주반> 주영국대사관, 주아일랜드대사관	주영국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일본대사관	주일본대사관 10:00
	국방위	병무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대전) 10:00
		[현장시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15:00
	행안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10:00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15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	해양수산부 별관 10:00
	산자중기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4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 시간
10. 13.(화) 12개 위원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회 10:00
	재경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10:00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8개 기관	국회 10:00
	외통위	<미주반>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유엔대표부 10:00
	국방위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국회 10:00
	행안위	경기도청	경기도청 10:00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농해수위	[현장시찰] 부경양돈 농협유통센터	김해 10:00
	산자중기위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등 7개 기관	지식재산처(대전) 10:00
		[현장시찰] 미정	대전 감사 종료 후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14개 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국회 10:00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5개 기관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 시간
10. 14.(수) 5개 위원회	교육위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국회 10:00
	외통위	<구주반> 주포르투갈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10:00
		<아주반> 주스리랑카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10:00
	문체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	국회 10:00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회 10:00
10. 15.(목) 11개 위원회	법사위	법제처	국회 10:00
		군사법원	국방부 14:00
	정무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부산국제금융센터 14:00
	재경위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10:00
	과방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 *ICT 관련 공공기관	국회 10:00
	외통위	<미주반>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등 4개 기 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10:00
	국방위	[현장시찰] 공군 제1전투비행단(광주공항)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광주) 10:00
		상무대	상무대(장성) 10:00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 시간
	행안위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10:00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현장시찰] 미정	부산 미정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기후노동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31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 기관	국회 10:00
10. 16.(금) 11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 17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현장시찰] 미정	창원 미정
	재경위	<지방1반> [현장시찰] 조달청 비축기지	군산 10:30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 10개 기관	한국은행전북본부 14:30
		<지방2반> [현장시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경산 10:00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 11개 기관	한국은행대구경북 본부 14:00
	교육위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현장시찰] [업무현황보고] (주)문화방송	상암MBC 10:00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기관	국회 오후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 시간
	외통위	<구주반> 주독일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등 4개 기관	주독일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10:00
	국방위	[현장시찰] 기아	기아(광주) 10:00
		[현장시찰] 육군 제31보병사단	육군 제31보병사단 14:00
		[현장시찰] 해군 제3항대사령부	해군 제3항대사령부 16:00
	문체위	[현장시찰] 미정	부산 미정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 4개 기관	국회 10:00
	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10. 18.(일) 1개 위원회	외통위	<미주반> 주콜롬비아대사관, 주니카라과대사관 등 4개 기관	주콜롬비아대사관 10:00
		<구주반> 주폴란드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등 4개 기관	주폴란드대사관 10:00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12(월) 14:00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0/14(수) 13:30	지역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광희·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10/15(목) 09:00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한국경제는 성장했는데, 우리는 번영하고 있는가?	백선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15(목) 14:00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이광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0/12(월)	「Data+」 제2026-16호(통권 제40호)	국회도서관	
	10/14(수)	「금주의 서평」 제2026-39호(통권 제798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0호(통권 제308호)	국회도서관	
	10/7(수)	「금주의 서평」 제2026-38호(통권 제797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7(수)	환경	2026년 9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10/7(수)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임직원 해고 시 유의 사항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